개방형 직위 운영 내규

제정 2015. 5. 6. 내규 제291호 개정 2016.12.30 내규 제328호 2017. 4.28 내규 제354호

제1장 총칙

- 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직제규정 제13조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관련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개방형직위의 운영

- 제3조(개방형직위의 지정) ① 임용권자는 직제규정 제13조에 따른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6.12.30.)
 -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·특성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.
 -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·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·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제4조(개방형직위의 충원시기) ① 임용권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와 임용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.
 - 1.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
 - 2.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
 - 3.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
 -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 - 1. 개방형 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직원을 전보하거나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
 - 2. 그 밖의 인사 운영상 개방형 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**제5조(개방형직위 선발시험)**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.
 - 1.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2.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 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②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의 방법, 시험과목, 합격자 결정 방법, 그 밖의 시험의 실시에 필

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.

- ④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제6조(공개모집의 예외) 임용권자는 제5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직원 중에서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, 다만, 개방형직위 임용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.
- 제7조(시험의 공고 등) ①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(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)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4.28.>
 -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수 있다.
 - 1.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공단 외부의 응시자가 없는 경우
 - 2. 제8조의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
 - 3.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
 -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의 공개 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,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8조(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) ① 임용권자(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)는 개방형직위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부장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②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·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임용권자가 위촉하며,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③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개방형직위 응시자와 「민법」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기타 이해당사자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.
 - ④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응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발시험위원회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고하여야 하고, 선발시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⑤ 임용권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로 제1항의 위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
 - ⑥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**제9조(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등)**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 예정 직위별로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,

-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③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 등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적격자를 임용한다. 다만, 개방형 임용 당시 직원(기간제근로자 제외)인 사람은 전보 등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.
- **제10조(임용기간)**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직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,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 - ② 임용권자는 개방형 임용된 직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9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- 제11조(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) ① 개방형임용 당시 직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(개방형 직위 재직 중 승진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 임용된 직급을 말한다)으로 임용하여야 한다.
 -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- 제12조(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) ① 개방형 임용 당시 직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1. 승진 임용의 경우
 - 2. 휴직의 경우
 - 3.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
 - 4.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 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.

제3장 보수 및 근무실적평가

- **제13조(보수)** ① 제5조에 따라 임용된 개방형직위 직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급 상당수준에 따른 기본 연봉과 성과평가 등에 의한 성과연봉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.
 - ② 성과연봉은 제14조에 따른 전년도 근무성과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별표 2의 지급률에 의거 익년도에 지급하되,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. (개정 2016.12.30.)
 - ③ 개방형 임용 당시 직원에게는 보수규정 또는 별도 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4조(근무성과평가) ① 운영 소관 본부장 또는 운영 부서장은 임용 계약시 개방형직위 임용대상자와 협의하여 연간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별지 서식 제1호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 운영 소관 본부장 또는 운영 부서장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별지 서식제2호의 성과목표 평가서를 작성하여 본인과 직상 업무감독자의 평가를 기재한 후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임용기간이 정기 평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의

종료 또는 근무기간 연장을 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③ 인사위원회는 제2항의 성과계획서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인사규정 제27조에 따른 근무평정을 참조하여 최종 평가를 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임용권자는 제3항의 결과를 성과연봉의 지급, 임용기간의 연장 또는 임용 계약 해지 등 개방형직위 직원에 대한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**제15조(근무성과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)** ① 인사담당부서는 근무성과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성과평가 결과(평가등급 및 점수, 종합평가의견으로 한정)를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② 근무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과 공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4.28.>
 - ③ 인사담당부서는 제2항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4장 개방형직위의 운영

- 제16조(개방형직위 임용계약 체결) ①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개방형직위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임용계약 서를 작성하여 체결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임용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.
- **제17조(개방형직위의 교육훈련)**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간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있다.
- **제18조(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)** ① 공단의 직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,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 - ② 개방형직위 직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사항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장 보칙

제19조(준용) 이 내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(2015.5.6)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12.30)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4.28)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 표 1> (제13조 제1항 관련)

개방형직위 기본연봉 적용 기준표

| 등 급 | 적용대상 | 적용기준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1ই | 처장급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원 | 1급 (29호봉 상당) | |
| 2ই | 팀장 및 소장급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원 | 3급 (23호봉 상당) | |

[※] 공단 직원이 임명될 경우에 당해 직원의 기존 호봉이 위 적용기준상의 호봉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기존 호봉을 적용한다.

<별 표 2> (제13조 제2항 관련) <개정 2017.4.28.>

평가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 및 인사 기준

| 구분 | S (탁월) | A (우수) | B (보통) | C (미흡) | D (부진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평가점수 | 110점 이상 | 100점 이상 ~110점 미만 | 90점 이상 ~100점 미만 | 85점 이상 ~90점 미만 | 85점 미만 |
| 성과상여금 및 인사기준 | 보수월액 × 280~300% | 보수월액 × 230~250% | 보수월액 × 180~200% | 보수월액 × 130~150% | 임용 해지 |

<별지 제1호 서식> (제14조 제2항 관련)

성 과 계 획 서

1. 임용예정자 인적사항

| 소속 및 근무부서 | 임용구분 | 성 명 | 임용기간 | 담당예정업무 |
|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--|
| | | | | |
| | | | | |

2. 업무성과목표

-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(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)
-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

| ① 단위목표 | ② 성과측정 기준 | ③ 추진일정 | ④비 고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|
| A) | | | |
| B) | | | |
| C) | | | |
| D) | | | |

① 단위목표 :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

② 성과측정기준: 단위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,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계량화하여야 함.

③ 추진일정: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

④ 비 고: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

<별지 제2호 서식> (제14조 제3항 관련)

성과목표평가서

1. 평가대상자 인적사항

| 소속 및 직위 | 임용구분 | 성 명 | 임용기간 | 담당업무 | 평가기간 |
|---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| | | | |

- 2. 업무성과 목표 평가
- (1) 성과 목표 대비 달성 성과 (단위 목표별 평가기간동안 달성한 성과를 요약 기재)
- (2) ※ 증빙 자료 별첨
- (3) 단위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

| | () () () () () () () () () () () () () (| | | 목 표달성도 평가 ⑤본인평가 ⑥작성업무감독자 ⑦인사위원회 ⑧실 적 (%) 평가(%) 평가(%) 가감점 | | | |
|-------|---|-------|-----------|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①단위목표 | 2 3 4 7 8 7 | ③추진일정 | ④ 업무비중(%) | ⑤본인평가 | ⑥직상업무감독자 | ⑦인사위원회 | 8 실 적 |
| | _ | | | (%) | 평가(%) | 평가(%) | 가감점 |
| A) | | | | | | | |
| B) | | | | | | | |
| (C) | | | | | | | |
| D) | | | | | | | |
| | | | | · | <u> </u> | · 평정점(⑦+⑧ |)) |

- ① 단위목표: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
- ② 성과측정기준 : 단위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
- ③ 추진일정: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
- ④ 업무비중 : 단위목표가 전체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(%)을 기재하되,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%가 되도록 함
- ⑤ 본인평가: 단위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(%)를 평가함
- ⑥ 직상 업무감독자 평가 : 직근 업무감독자가 단위목표에 대한 달성도(%)를 평가함
- ⑦ 인사위원회 평가 : 본인 평가 및 직상 업무감독자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평가함
- ⑧ 실적 가감점 : 기관장이 단위목표별 평가실적을 참고하여 총점대비 가감점(±20)을 기재함
- ⑨ 최종 평정점: 단위목표별 인사위원회의 평정점의 합계 + 실적가감점

근무성적평정 결과 이의신청서

□직 급:

□성 명:

□소 속:

□ 평가기간:

□ 평가결과:

□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(추가 증빙 자료 첨부)

※ 정확한 평가를 위해, 성과 여부를 측정할 수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제시

0000.00.00.

청구인 〇〇〇(서명)

이사장 귀하